

<신용카드 정기결제서비스 특약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16,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24 조의 14 에 따라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 조 [정의]

1. "정기결제"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에 따라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고 빌게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2 조 [가맹점의 의무]

1. "가맹점"은 정기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금액이 증가 또는 유료로 전환될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액의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수단(우편, 이메일, 전화, SMS 등)을 통해 아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① 거래내용
 - ② 결제금액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 ③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 ④ 환불 등의 거래조건
 - ⑤ 거래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 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2. "가맹점"은 정규 영업시간 이외에도 정기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정기결제 계약의 해지, 취소,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상품의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 및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을 따른다.

제 3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가맹점"이 제2조의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